

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

제정 2013. 3. 6 조례 제1282호
일부개정 2015. 1. 9 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18. 5. 14 조례 제180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용의 보조 등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 활동)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5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6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진흥·홍보출판·국제교류 등의 업무
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8.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9.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 삭제 <2018. 5. 14>

제5조 삭제 <2018. 5. 14>

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

제6조 삭제 <2018. 5. 14>

제7조 삭제 <2018. 5. 14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
2018. 5. 14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. 9 조례 제1421호,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「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와 제7조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각각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⑯ 부터 ㉔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